

창원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124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5. 10.

판결 선고2024. 5. 31.

주 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은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3. 3. 7. 접수 제33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C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2기 및 202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C에 대하여 2023. 10. 16.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479,97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단위 : 원)

1	부가가치세	2022. 2기	2023. 3. 31.	36,836,590	36,798,530	2022. 12. 31.
2	부가가치세	2023. 1기	2023. 8. 17.	57,230,700	59,681,440	2023. 4. 28.
합계	94,067,290	96,479,970				

나. C은 2023. 3. 7. 동생인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은 'D' 관련 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2023. 4. 20.부터 2023. 6. 2.까지 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1,824,612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최대 73,974,013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중 앞서 본 표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표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202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일부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매출계약이 성립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3. 4. 2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앞서 본 표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 조세채권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1,824,612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836,590원 상당(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이 있었고,

피고 B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최대 73,974,013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4,067,290원 상당(2022년 2기 및 202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이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으로 C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은 2012. 2.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C에게 그 주장과 같이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A이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에게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3. 3. 7. 접수 제33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미선

별지